2017. 4
Vol. 40

BIZart 비자트

Business & Art Magazine for CEO

HOT ISSUE
포괄임금제 적용 위법…미지급 임금 줘야

FOCUS
개정 법인세법·조특법 주요내용 체크

CEO INTERVIEW
'인포테리어' ㈜스페이스레븐 김동윤 대표

주목 이 작가
카르페 디엠, 기진호 작가

슈퍼 컬렉터
헐리우드 NO.1 아트 컬렉터, 데이비드 게펜

기진호_ 풍선 162.2x130.3cm 유화 2014

BIZart 비자트

2017. 4

Business & Art Magazine for CEO

Business

03 **HOT ISSUE** - 노무 포괄임금제 적용 위법…미지급 임금 줘야

06 **BIZ REPORT I** - 법무 동업계약서 작성할 때 필요한 조항

08 **BIZ REPORT II** - 특허 수명 짧고 유행 민감한 제품 '中 실용신안'

11 **CEO INTERVIEW** - 경영 '인포테리어' ㈜스페이스레븐 김동윤 대표

14 **FOCUS** - 세무 개정 법인세법·조특법 주요내용 체크

16 **NEWS BRIEFING** - 경제뉴스 1차벤더 현금 받고…하위협력사엔 어음 지급

Art

17 **주목 이 작가** 카르페 디엠, 기진호 작가

22 **슈퍼 컬렉터** 헐리우드 NO.1 아트 컬렉터, 데이비드 게펜

24 **예술 별*방** 광장에서 합창하는 봄을 위한 노래

26 **관념미학 어워드** 관념미학 어워드 수상작

28 **한국화 읽기** 인생무상과 부귀영화를 소망하는 화훼화

30 **예술가의 뮤즈** 마르셀 뒤샹

제호 BIZart 비자트
통권 Vol. 40
발행처 ㈜에스엠비넷 ㈜예술만세
발행일 2017. 4 .1

기획 중기이코노미, 키스갤러리
경제콘텐츠 손채윤, 박현진, 채민선, 이가영
김성화, 박홍기
아트콘텐츠 김현성, 안진국, 이유미
디자인 환크리에이티브컴퍼니

주소 (137-872)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55, 2층 201호
(서초동 고금빌딩)
전화 02)525-7021 ㈜에스엠비넷
02)745-0180 키스갤러리
팩스 02)6499-1391
월간 6,000원
등록 2013. 12. 11(등록번호 서초 라11599)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 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글.
노동OK **김성호** 상담실장
seekhoper@gmail.com

포괄임금제 적용 위법하면 미지급 임금 줘야

요양보호사 적용 법 위반…리스크 줄이려면 재설계·보완 필요

노동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하고, 업무의 밀도가 높은 요양보호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위법이다(대법원 2016.9.8. 선고 2014도8873). 포괄임금제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연장, 야간, 휴일가산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의 산정방법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 자체가 곤란한 경우에 판례는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인정한다.

◇ 사실관계

경기도내 노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은 포괄임금 계약과 관련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인센터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 요양보호사들은 노인센터의 대표와 일체의 법정수당 그리고 상여금 등이 포함된 월정액 11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요양보호사(이하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주간, 야간 그리고 휴무인 3교대제였다. 주간조 근로자는 오전 8시30분에 출근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6시30분까지 1일 9시간을 근무했다.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

야간조 근로자는 오후 6시30분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근무, 근로시간 도중 4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다.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야간에 요양대상자가 비상벨을 누르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늘 '대기상태'로 있었다. 대기상태의 법적 성격에 대해 우리 법원은 일관되게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검찰 역시 대기상태를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는 야간에 휴게할 수 있는 야간수면실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검찰의 주장과 달리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4시간 중 1시간만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3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판단했다. 야간수면실은 4층 원장실을 통해 출입할 수 있었고, 수면실 내에는 간이침대 2개와 침구류뿐이어서 근로자들이 수면을 취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근로시간으로 판단한 이유다. 야간조 근로자들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13시간을 근로했고,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에서 5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다.

검찰의 기소요지는 연장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수당, 그리고 야간근로시 중복할증 지급돼야 하는 야간근로수당 등을 합하면 월 110만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미지급)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실제 지급된 임금 110만원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연장·야간수당 등을 제외한 기본임금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란 주장이다.

◇ 포괄임금제 기본법리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해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1997.4.25. 선고 95다4056 판결 등 참조).

이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따라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해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판례법리를 정리하면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해 지급된 임금총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초로 계산한 임금총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다.

◇ 1심, 포괄임금 계약체결 유효

3교대제이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근무는 당연히 예정됐고, 포괄임금제 계약에 합의한 근로자들이 퇴직일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포괄임금제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근기법과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2심과 대법원, 포괄임금 계약체결 무효

이 사건 요양보호사에 대한 포괄임금제 적용이 무효라는 근거에 대해 법원은 "포괄임금제 적용이 가능한 '감시 혹은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임금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는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출·퇴근 시간 및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 업무의 밀도가 상당히 높았고 ▲4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긴 했지만 수면실 사정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이 수면을 취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 3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했고 ▲휴게시간이 없어서 근로자들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했던 점을 인정했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한 후 법원은 "이 사건 노인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여 이들에게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포괄임금제 약정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효"로 판단, 노인센터 대표에 대한 유죄선고와 함께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2심 판결을 확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업무의 밀도나 노동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높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포괄임금제 적용이 상당히 제한된다. 또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지급한 임금총액이 실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례다.

특히 포괄임금제가 법원 판결 등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지난 3년간 미지급한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더욱이 해당 근로자 이외 같은 사업장내 근로자 모두가 청구하는 경우 3년간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임금지급방법으로 포괄임금제를 운용하고 있는 사업주라면 포괄임금제가 법위반이 되지 않도록 재설계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BIZart

글.
로펌 고우 **고윤기** 변호사
kohyg75@hanmail.net

동업자 몰래 같은 사업 못하도록 '경업금지' 조항 필요

동업계약서 '경영에 관한 사항'…역할, 감시, 운영비 및 손실금 부담 조항

동업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①출자에 관한 사항 ②경영에 관한 사항 ③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④동업의 탈퇴에 관한 사항이 있다. '출자에 관한 사항'이 중요하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 가지만, '경영에 관한 사항'은 중요성을 떠나 어떻게 혹은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경영에 관한 사항은 동업자간의 역할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다. 동업자 1인은 경영을, 나머지 동업자 1인은 기술·노하우 등을 전수 하는 등 역할을 분배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모든 일을 합의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든 회사가 커지고 나면, 경영자는 대외적으로 독립해 일을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음은 경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업계약의 예시다.

〈동업자간 역할을 분담하는 경우〉

제2조 (역할)
① "갑"은 본 미용실 운영과 관련된 기술·노하우 및 경영지도를 책임진다.
② "을"은 "갑"의 지도에 따라 본 미용실의 실제 운영을 책임진다.

〈일반적인 경영조항의 예시〉

제3조 (을의 경영의무) 을은 성실한 관리자의 주체로서 위 영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갑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의 대표의무) 위 영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는 을이 이를 대표하며, 권리의무는 을이 부담·취득한다.

〈소규모 동업의 경우〉

제2조 (경영)
경영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의 협의로 정한다. 다만, 갑과 을은 일금 원 이하의 소액 건에 대해서는 선 집행 후 서로에게 보고한다.

경영에 관한 사항을 처음부터 자세히 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예상치도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 문제들은 동업자간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동업계약서를 위의 예시처럼 작성한 이후에도, 경영과 관련해 동업자와 협의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면, 동업자간에 의논해서 일정한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다. 이런 처리 결과가 쌓여 가면, 더욱 치밀한 동업계약서가 만들어 질 수 있다.

◇ 투명한 경영을 위한 감시조항

동업에서 중요한 것은 동업자간의 신뢰다. 동업자간의 신뢰를 부여하는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제일 좋은 방법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동업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결국 돈 문제다. 특히 경영을 하는 사람은 다른 동업자에게 자신의 경영에 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경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괜히 감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의 권한을 침해받는다는 느낌도 들기 마련이다. 이런 때를 대비해 동업자의 회계자료 등 경영관련 자료를 요구할 권한을 동업계약서에 넣는 것이 좋다. 다음은 예를 든 감시조항이다.

〈경영에 대한 감시조항 예시 1〉

제5조(갑의 영업에 대한 감시권)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영전반의 경리·회계에 관한 사항과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경영에 대한 감시조항 예시 2〉

제3조 (경영)
① 을은 수익분배의 투명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갑에게 매출 정보 등의 자료를 통지하고 이와 동시에 당해 수익분을 매 분기별로 지급한다.
② 갑은 언제든지 매출 및 기타 경영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회사의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방해할 수 없다.
③ 갑이 본조에 의하여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갑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외부에 유출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 운영비 및 손실금 부담 조항을 정하는 법

사업을 하다보면 돈을 항상 버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 받은 출자금으로도 적자를 메워 가며 운영이 가능한 경우라면 몰라도, 운영비 및 손실금 부담에 관한 조항도 정해 놓는 것이 좋다.

〈운영비 및 손실금 부담 조항의 예시〉

제3조 (운영비 및 손실금 부담)
① 기간별 경영활동에 따른 운영비가 자본금으로 운영되지 못할 시에는 소요되는 운영비를 동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일시 분담하고, 단기 차입금 또는 일시가수금으로 처리한다.
② 기간별 경영활동을 결산하여, 적자경영으로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손실금을 분담하고 자본금으로 전입한다.
③ 전 1항의 약정에 따라 입금된 단기차입금 또는 일시가수금은 동업자간 합의를 거쳐 출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 다른 마음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경업금지 조항

사업이 잘 진행되다보면, 가져서는 안 될 욕심을 가지는 동업자가 나오기 마련이다. 동일한 사업을 동업자 몰래 시작한다던지, 제3자를 통해 동일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하나 더 차려 돈을 벌려고 하는 경우다. 이를 못하도록 동업계약서에서 못 박아 두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경업금지(競業禁止) 조항이라고 한다. BIZart

〈경업금지 조항의 예시〉

제8조 (경업금지)
① 갑은 본 계약상 동업하는 을의 사업과 동일한 부류의 업을 경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익분배권을 상실한다.
② 갑이 을의 회사 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와 공모하여 우회적인 경업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글.
중기이코노미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수명 짧고 유행 민감한 제품은 '中 실용신안'

특허보다 권리기간 짧지만 유용…중국 지식재산권 '전리권'

#1. 디스플레이장비 업계 선두인 국내 A기업은 중국 진출을 앞두고 사전에 중국 내 특허를 획득했다. 혹시 모를 지재권 분쟁에 대비, 자사의 핵심특허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진출 후 A기업의 경쟁사였던 중국 B사가 A사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B기업이 A기업의 핵심특허로 제품을 만들어 이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선점하고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중국의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등록비용이 저렴하고 심사기간은 짧지만 권리는 동일하다. 이에따라 기업 대다수가 특허보다 실용신안을 활용한다. A기업은 이를 알지 못했다.

A사는 적지않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이의신청과 소송 등을 진행했고, 특허가 유효하다는 선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쟁사들은 일반 개인을 청구인으로 해 특정기술 1~2개씩 바꾼 제품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A기업은 소송에 드는 막대한 비용에 부담을 느껴 무효심판 대응을 포기했고, 결국 특허는 무효화됐다.

#2. 2010년 스마트폰 터치장갑을 개발한 C기업은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중국진출을 계획했다. 그 과정에서 주변으로부터 실용신안을 취득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3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부담돼 실용신안을 등록하지 않고 중국에 진출했다. C기업의 제품은 큰 인기를 얻으며 성공적으로 오픈마켓에 자리 잡았다. 해당제품은 하루 2000~3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던 어느날 C기업은 오픈마켓으로부터 특허권리 침해경고장을 받았다. 알고보니 서너 개의 중국기업과 개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자신이 스마트폰 터치장갑의 '실용신안특허 권리자'라고 주장한 것이다. 오픈마켓은 지재권 문제를 거론하며 일방적으로 판매계약을 해지하고 C기업의 판매아이디를 삭제했다. C기업은 뒤늦게 회사 법무팀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막대한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중국에서 철수해야 했다.

한·중 FTA와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늘면서 양국 간 지식재산권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이 발표한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를 보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발생한 해외 지재권 분쟁 235건 가운데 86건(36.3%)이 중국에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중견·중소기업의 피해는 70건(81.3%)에 이른다. 전담인력을 두고 지재권을 확보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이 지재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데다 향후 FTA로 인한 시장 확대가 예상돼 이를 소홀히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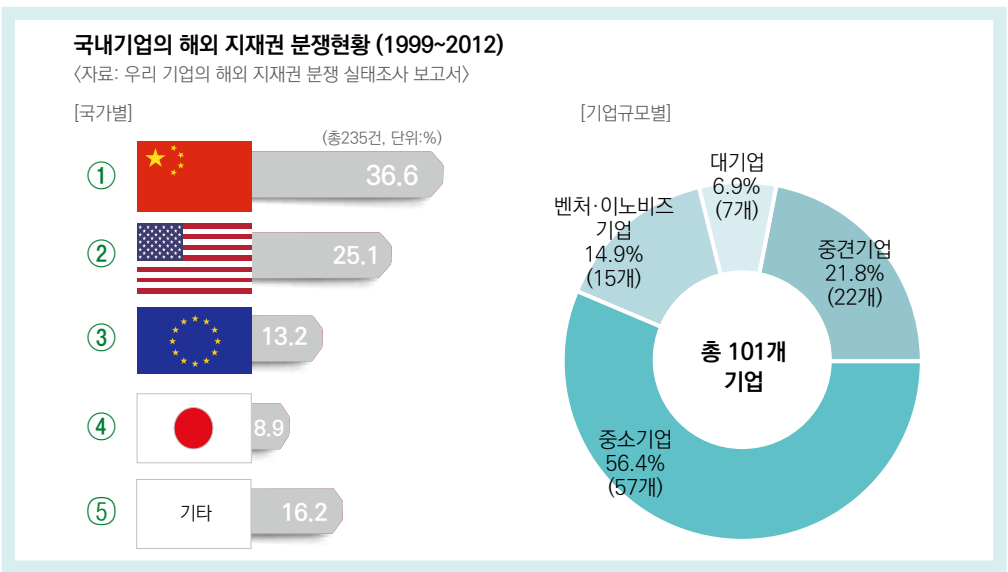

'특허' 대신 저렴하고 심사기간 짧은 '실용신안' 유리

중국은 지재권 운영체계가 한국과 다르다. 한국의 경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각각 독립된 법체계로 보호를 한다. 하지만 중국은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이 전리법(专利法)이라는 단일 법체계로 묶여 있다.

눈여겨 볼 것이 실용신안이다. 발명전리(특허)와 비교하면, 등록에 드는 비용이 저렴하고 심사기간이 짧아 권리자가 쉽게 권리를 얻을 수 있다. 예컨대 발명전리의 경우 최초 등록에서 출원까지 건당 평균 4350위안(약 76만원) 정도가 든다. 그러나 실용신안은 1100위안(약 19만원)이면 가능하다. 제품에 대한 실질심사를 하지 않아 약 4.3개월이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발명전리는 통상 22개월이 걸린다. 아울러 침해가 인정되면 특허와 동등한 수준의 침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특허에 비해 진보성(선행제품과 비교해 특출한 실질적인 특징과 진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기준이 낮은 탓이다. 등록하는 순간부터 별도의 절차없이 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기업과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실용신안 출원이 급속히 늘고 있다. 2014년 기준 유효 실용신안권은 223만건이며 이 가운데 3009건은 일본기업이, 1705건은 미국기업이 출원했다.

단 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권리를 보장하나, 실용신안은 절반인 10년만 보장한다. 또 물품 형상, 구조, 결합만 보호하기 때문에 제조방법이나 기술을 보호 받으려면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따라서 방법, 물질, 분자구조, 컴퓨터 프로그램 등은 실용신안 출원 대상이 아니다.

중국 실용신안의 특징

〈자료: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분쟁 실태조사 보고서〉

항목	주요내용
보호대상	·특허와 달리 물품의 형상 구조 및 그 조합만이 실용신안의 대상 ·방법, 물질, 분자구조, 컴퓨터프로그램 등은 실용신안 출원대상X
방식심사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만 심사해 등록 가능 ·2013년 9월 개정된 실용신안 심사지침서에서는 실용신안 초보심사 시 무검색 원칙 폐지, 심사관은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신규성 위반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거절률은 10% 미만
평가보고	·2008년 제3차 전리법 개정에서 실용신안 및 디자인권에 대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규정 도입. 의무사항X
이중출원	·동일 발명에 대한 동일자의 실용신안 및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 허여시 등록 실용신안을 포기하고 특허 등록 가능
등록절차	·출원인은 실용신안 수여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절차를 수행해야 함.
권리효력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존속 ·등록 후 별도 평가절차 없이도 권리행사가 가능해 특허보다 많이 활용

中 진출 전 특허조사 필수…지재권 침해 당하면 협상부터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자유실시 기술분석(FTO)을 통해 중국내 관련 특허나 실용신안의 등록 여부와 지재권 침해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제품 및 기술에 대한 보호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FTO를 통해 전문가로부터 특허 비침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면, 특허의 고의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

최초 판매·생산 제품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공증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실용신안의 무심사제도를 이용해 한국기업 제품에 대해 악의적으로 실용신안권을 획득, 공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제품을 출시하거나 새로운 공정을 실시하는 경우 공증을 받아두면 권리 선점에 대한 실증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은 특허무효소송과 관련 선행특허문헌 외에도 제품 설명서, 매뉴얼, 논문, 잡지 등과 같은 비특허문헌 및 실사용 증거도 인정하고 있어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할수록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제품이나 기술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예컨대 실용신안 권리보호기간은 10년으로 특허의

20년보다 짧지만 기술사이클이 짧은 제품, 유행에 민감한 제품의 경우 실용신안만으로 충분히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시장 수명이나 경쟁자 출현 등을 예상하기 어려운 제품이라면, 실용신안과 특허를 이중출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국은 동일 제품에 대해 실용신안과 특허를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하나의 제품에 두가지 지재권을 동시에 출원하고, 실용신안을 먼저 행사한 후 특허 등록이 되면 특허권을 행사하는 전략이다.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출원해야 한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 지재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즉시 소송 보다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소송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 기업에도 피해이기 때문이다.

협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권리구제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행정보호와 사법보호를 통해 이중으로 지재권을 보호하는 '쌍궈제'가 대표적이다. 등록 지재권에 대한 중국기업의 침해행위가 일어난 경우, 직접 법원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해당업무 담당 행정기관에 침해자의 행정제재도 청구할 수 있다. 행정보호를 활용하면 심리, 결정, 단속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의 전리권에 대한 단속은 실효성이 높지 않다. 사법보호는 강제집행 권한이 있어 사건의 최종적인 해결수단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최종판결까지의 시간도 오래 걸린다.

모든 수단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지재권 침해를 구제받는 수 밖에 없다. 지방보호주의가 강해 지재권 전문 1심법원을 이용하는게 용이하다. 중국은 2014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 지재권 전문 1심법원을 설립해 지재권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해당도시의 경우 법규격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권리 침해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다. 반면 기타 중소도시, 특히 침해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처벌 강도가 약한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소송이 시작되면 침해사건과 관련한 상세 증거자료와 문서를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증거자료 불충분 사유로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것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중국인의 자국민 보호성향을 피해, 믿을 만한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BIZart

중국지재권 보호체계

〈자료: 특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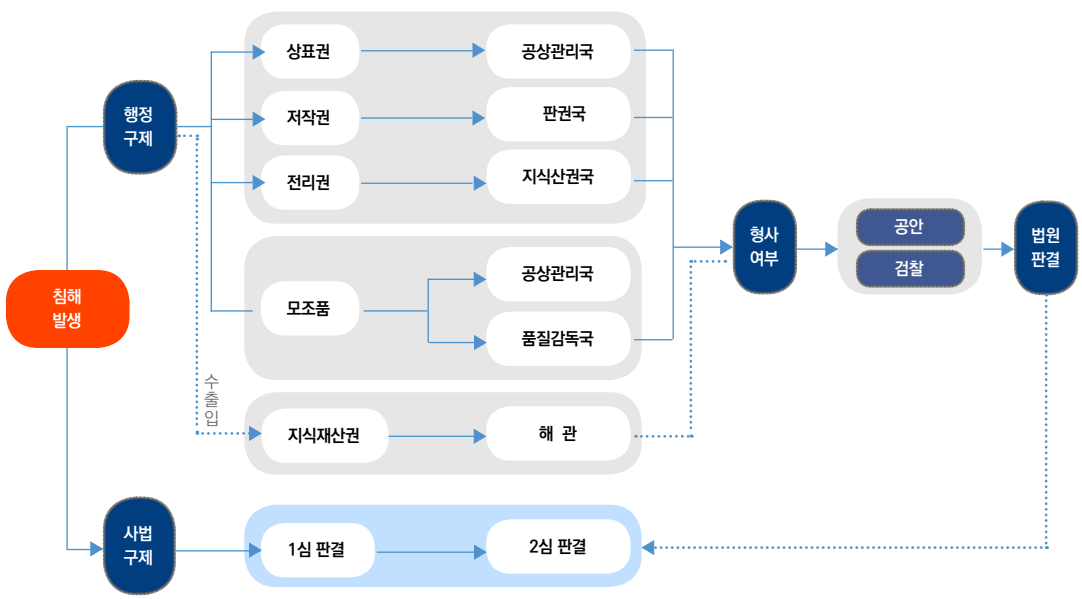

글.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1 인테리어 분야에서만 14년간 활동해 온 김동윤 대표는 자신이 제일 좋아하고 잘 아는 분야인 인테리어 사업으로 끝장을 보고 싶어 인포테리어를 개발했다.〈사진:중기이코노미〉

디자인부터 공사·AS까지…소비자와 업체를 잇다

인테리어 플랫폼 '인포테리어' ㈜스페이스레븐 김동윤 대표

모든 공간에는 인테리어가 있다. 가정집부터 상업공간, 공공기관, 거리와 공원에도 사람이 있는 모든 공간은 인테리어로 시작된다. 국내 인테리어 시장은 10조원, 인테리어 자재시장도 26조원, 리모델링 시장은 28조원 규모에 달한다. 앞으로 창업시장이 커지고, 1~2인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인테리어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실 소비자가 인테리어 작업을 결정하기까지 과정은 만만하지 않다. 보통 부동산 임대계약을 하고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2주에 불과하다. 임대료와 오픈 일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창업자는 서둘러 인테리어 업체를 결정해 공사를 진행한다. 업체마다 제각각인 공사비용과 공사과정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공사후 불만족 등을 적잖이 경험한다.

이미 포화상태인 인테리어 업체의 사정도 좋지만은 않다. 인테리어 공사는 선수금을 받아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초기 자본없이 쉽게 창업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건축 인테리어 자재업체는 15만여개, 인테리어 업체는 3만여개에 달한다. 인테리어 업계의 과다경쟁으로 창업과 폐업이 빈번하고, 이는 사후관리를 어렵게 해 고객 피해로 돌아간다. 인테리어 업체의 생존기간이 짧은 이유 중 하나는 포화상태의 시장에서 마케팅이 미숙하다는 점이다.

인테리어 가맹점 운영…가맹본부 폐업으로 투자금도 날려

㈜스페이스레븐 김동윤 대표는 소비자와 업계의 이러한 고민거리를 덜어주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와 공급업체를 연결해주는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 인포테리어를 개발했다고 말한다.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은퇴자금 등 자신의 전 재산을 창업에 쏟아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창업자금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시장에 거품이 많죠. 여러 업체를 비교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인포테리어의 개발 이유입니다."

인테리어 분야에서만 14년간 활동해 온 김 대표는 인테리어 기업에서 회사생활을 하며 '악착같이' 배운 후 자신의 사업을 운영했었다. 당시 인테리어 가맹점에 가입해 운영하다 가맹본부가 폐업하는 바람에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사업을 접어야 했다. 김 대표는 재기를 위해 여러 분야를 고심했지만, 자신이 제일 좋아하고 잘 아는 분야인 인테리어 사업으로 끝장을 보고 싶었다.

"이전처럼 단순히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고객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고객과 업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O2O서비스를 개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인테리어에서 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지만 IT분야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 그는 인테리어 플랫폼 개발을 위해 두달간 120여권의 IT관련 서적을 탐독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IT전문가를 영입해 2015년 9월 인포테리어 베타버전을 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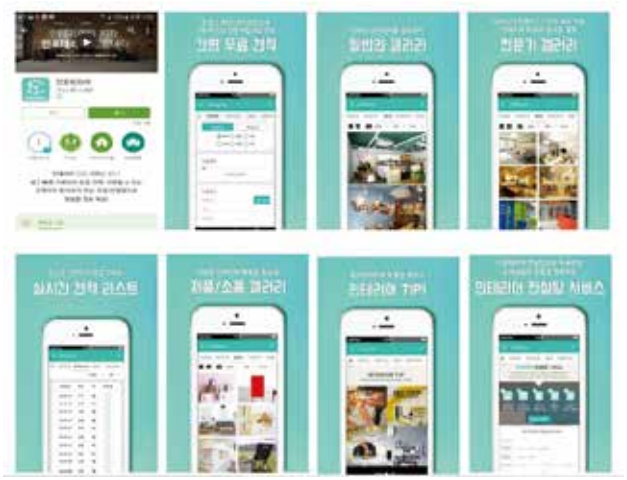

2 인포테리어의 서비스〈자료:스페이스레븐〉

|인테리어 시장규모| 〈자료: 중기이코노미〉

디자인부터 견적·공사·AS까지 한 번에 해결한다

인포테리어에서는 디자인부터 견적·공사·AS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인테리어 스타일과 조건을 올리면, 위치를 기반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최대 5곳에서 무료로 견적을 받아본 후 비교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 인포테리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인테리어 업체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마음에 드는 업체에 따로 견적요청을 해도 된다. 인포테리어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쉽게 인테리어팁을 구경하고 인테리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간 전체를 바꾸는 공사가 아닌 단순 시공이나 벽지 교체 등 부분 인테리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상업용 공간의 경우는 인포테리어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 무료로 상담을 해준다. 상담은 신청 후 24시간 내에 전국 어느 곳이든 찾아가 진행한다. 상담을 통해 적합한 인테리어 포맷과 비용을 결정하고, 이 정보를 업체에 제공해 조건에 맞는 업체를 창업자에게 추천해준다. 견적 역시 무료다.

인포테리어에 회원으로 가입한 업체는 전국적으로 800여개다. 인포테리어는 인테리어 업체의 마케팅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한다. 인포테리어를 통해 견적을 제공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공사비 1~3%의 수수료를 받는다. 1억원짜리 공사면 100~300만원 정도가 된다. 3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실력이 좋고 양심적인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도 많은데, 인테리어 시장에 대한 불신이 많다보니 제대로 사업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곳도 있습니다. 가격의 거품을 빼고 양심적인 사업을 하는 인테리어 사업주들을 돕고자한 것도 인포테리어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인포테리어를 통해 인테리어 계약을 하고 작업한 완성 모습 | 〈사진:스페이스레본〉

3 A헤어숍

4 B프리미엄 독서실

5 C네일숍

가맹사업, 부설연구소, IoT 제휴…'인테리어 플랫폼' 지향

현재는 수수료를 통해 얻는 수익이 대부분이지만, 향후 인포테리어는 인테리어 모든 사업으로 다각화해 인테리어 플랫폼으로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지난 2월부터는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전국의 인테리어 업체 중에서도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업체를 가맹점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가맹점은 인포테리어를 대표해 전국의 고객을 찾아가 인테리어 상담을 하고 공사와 AS를 담당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기업부설연구소도 설립했다. 김 대표는 경영학 박사과정에서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사슬관리)을 전공하고, 인테리어를 O2O와 어떻게 효과적으로 매칭할 것인가를 연구했다. 그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소비자가 직접 3D로 인테리어를 시뮬레이션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또 인테리어 산업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오차범위 5% 내에서 자동견적을 내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인포테리어 온라인을 통해 인테리어 자재를 공동구매 하거나, 희소성 있는 제품을 거래하는 종합 인테리어 쇼핑몰도 계획 중이다.

최근에는 사물인터넷(IoT) 전문기업 네콘과의 제휴로 스마트 인테리어를 제공하는 사업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인포테리어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모든 가전제품의 통합제어기능, CCTV, 에너지 절약, 24시간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비상 상황시 출동 보안서비스 등을 통합 패키지로 월 1만 9900원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인포테리어는 현재 음식점·커피숍·에스테틱 등 5개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과 인테리어 업체를 연결해 주는 일을 맡아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인테리어로 수익을 내려는 관행이 있습니다. 한 유명 커피전문점은 점주에게 특정 인테리어 업체를 소개하고, 공사비의 30%를 리베이트로 받아 250억원의 수익을 챙기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많고, 인테리어를 통해 수익을 내려는 프랜차이즈도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저희와 계약한 프랜차이즈들도 기본 요건만 갖추면, 점주들이 원하는 대로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책임감과 신뢰…국내시장 넘어 글로벌 시장 진출

김 대표는 사업의 기본은 '책임감'과 '신뢰'라고 말한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분당의 한 개인고객이 인포테리어 홈페이지에서 본 한 업체와 개인적으로 계약해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 후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했지만, 이 고객은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인포테리어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 인포테리어를 통해 계약한 일은 아니었지만 김 대표는 발벗고 나섰다. 업체 대표를 수소문해 하자보수 책임을 질 것을 요청했고, 만일 책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등 고객을 도와 함께 싸울 것을 밝혔다. 결국 해당업체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결했다.
인포테리어는 첫 베타버전 출시 후 1년 반 남짓의 시간동안 빠르게 성장했다. 국내 인테리어 업계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한달에 300~400건의 인테리어 계약이 인포테리어를 통해 성사되고 있다. 김 대표는 올해 안에 누적 견적요청금액 3000억원, 이 중 계약 체결률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전국 3000여개 인테리어 회사와 1만여개 인테리어 제품 판매회사를 확보해 2019년까지 시장점유율을 12%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시장을 넘어 앞으로 홍콩·싱가포르·대만·일본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목표도 세웠다. BIZart

글.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 실가입일수만큼 손금 인정

中企 접대비 손금인정 2400만원 한도 내년말까지 연장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을 제대로 알고 적용하면, 세제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세무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한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는 각종 세법들 중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본다.

올해 시행되는 개정 법인세법에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한 비용 손금산입을 보완한 내용과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등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거나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법을 보면 업무용으로 렌터카를 사용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법인의 임직원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는 특약(임대차특약)이 있는 경우 전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 2016년 4월1일 이후 기존보험이 만기된 이후 하루라도 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승용차 관련비용 전체를 손금산입할 수 없었지만, 이를 개정해 업무전용보험 의무가입일수 중 실제 가입일수 만큼 손금으로 인정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보완했다.

가령 중소기업 A사가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가입한 경우를 보자. A사는 2016년 4월31일 자동차보험이 만기돼 5월1일부터 일반자동차보험으로 갱신했다. 이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으로 가입해야 손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6월1일부터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으로 다시 가입했다. 이 경우 법 개정 전이라면 만기일인 4월31일과 6월1일 사이 전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있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불산입해야 한다. 하지만 법개정에 따라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의무가입일 245일 중 전용보험을 가입한 214일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즉,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그 중 1000만원×214/245=873만4694원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정법인 접대비 등 손금산입 한도 50% 축소

손금인정이 제한되는 법인의 요건을 설정하고, 손금인정 제한을 강화해 과세합리화를 목표로 개정된 내용이 있다.

손금인정이 제한되는 법인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수입, 이자 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최대주주 및 친족관계인 근로자,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회사 등이다. 이 법인들은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가 일반법인에 비해 50% 축소되고, 또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인정되는 손금한도도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를 2400만원까지 증액하는 한도특례기간은 연장된다. 법인세법 특례에서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인정 기본한도를 종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증액했던 법안이 지난해말 일몰됐다. 조특법 개정에서는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상생협력 세제지원 확대·벤처기업 출자시 세액공제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 국내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을 출연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 중 기금사용 목적을 연구·인력개발·생산성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으로 제한했던 내용을 폐지했다. 공제율도 종전 출연금의 7%에서 10%로 상향했으며, 적용기간은 종전 지난해말까지였으나 201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개정된 조특법에는 국내법인이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해 지원하는 창업기업에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경우 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공제율은 취득가액의 3%이며, 일정기간(5년) 이내에 설비 등을 회수하면 세액공제액을 추징한다. 창업보육센터 등은 무상임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1년마다 임대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적용기한은 2019년 12월31일까지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합병 및 주식인수 시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됐다. 세액공제 요건 중 합병·인수가액 중 현금지급비율이 종전에는 80%를 초과해야 했지만 50% 초과로 완화해 인수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개정 조특법에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해주는 조항도 신설됐다. 내국법인이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해 직접출자를 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간접출자를 하면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는 내용이다.

청년창업中企·장수성실中企,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

종전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해주던 것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상향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첫 3년간은 75%, 이후 2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창업자,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창업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일 때 해당한다. 법인인 경우 창업자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이어야 한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제지원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31일까지다.

이와함께 현재 지역·업종·기업규모에 따라 5~30%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에서 장기간 성실하게 경영한 장수성실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기존대비 10% 상향해준다. 장수성실중소기업의 요건은 ▲10년 이상 계속 사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것 등이다. 또 종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지원업종 49개에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의 업종이 추가됐다. 이들 의원들은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BIZart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보장내용 (법인령 제50의 2)

현행	개정
2016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기존보험 만기일 이후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하루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전체를 손금 불산입	일부기간만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금산입 방법 신설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최초 사업연도 1회에 한함 일부기간만 업무용자동차보험 가입한 경우 손금산입 금액 산출방법: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X업무사용비율X(업무전용보험 실제가입일수÷사업연도 중 업무전용보험 의무가입일수*)** *2016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기존보험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글.
중기이코노미 www.junggi.co.kr
junggi@junggi.co.kr

1차벤더 '현금' 받고…하위협력사엔 어음 지급

중소협력사들의 자금흐름을 원활히 하기위해 지난 2015년 상생결제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지만, 1차벤더 이하 협력기업들에 대한 상생결제 비중은 1%대에 불과해, 제도 확산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상생결제 흐름도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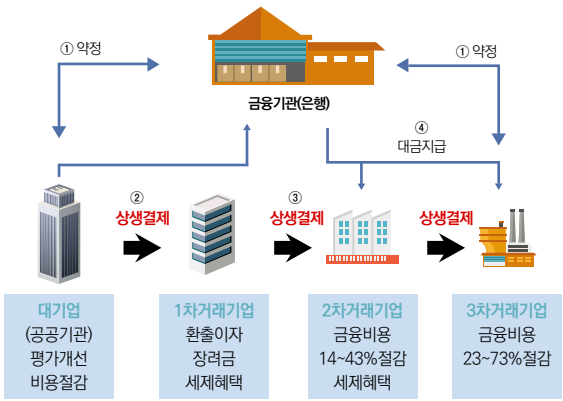

*** 2차 이하 거래기업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위 거래기업에 결제진행**

회생절차 중이라도 외부감사 선임해야 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는 외부감사(이하 외감)를 선임해야 한다. 외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합병으로 소멸했거나, 청산중이어야 한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외부감사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외사유를 충족하지 않고 외부감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외감 강제지정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품 원재료·유통기한 크고 또렷하게 표기해야

식품 포장지에 필수적으로 담아야 하는 식품의 원재료나 유통기한 등은 앞으로 큰 글씨로 또렷하게 표기해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의 표시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표시기준을 보면, 2018년부터 식품의 표시사항 중 주요 원재료,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는 글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 개정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가맹계약 갱신 거절 "독소조항 있고 예외 많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투하자본 회수 보장을 위해 가맹점주가 희망하는 한, 최장 10년의 한도 내에서는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갱신요구권은 가맹점주들이 사업을 계속할지 말지에 관한 선택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에서는 모든 가맹계약에 대해 갱신요구권을 부여하지는 않으며, 너무나 많은 예외를 두고 있다. 게다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것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표적세무조사' 세무공무원…처벌 규정이 없다

'표적세무조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무공무원의 직권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공정한 세무행정을 차단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이 부담한 세금을 돌려줄 때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의 가산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근로자 '구직급여' 위해 이직확인서 수정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 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을 작성해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맛집 유명' 상표등록하려는데 모방상표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표를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출원을 하지 않으면 상표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선출원주의 하에서는 '진실한' 상표 사용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표법에서는 비록 상표 출원이 늦더라도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콜롬비아 FTA세율, 최혜국대우 세율보다 높네

한·콜롬비아 FTA를 활용해 관세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FTA세율이 콜롬비아 최혜국대우(MFN) 세율보다 높은 경우 MFN세율에서 0.5%의 관세를 추가 인하해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FTA는 수입관세를 연도별로 조금씩 인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발효된 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품목은 적다.

| 한·콜롬비아 FTA 추가 특혜 관세 예시 | 자료: 관세청

※ 대상품목: 자동차의 완충기와 그 부분품(HS 8708.10-0000)-'a'

· 기준세율 15%(2010년)/MFN세율 10%/ 양허유형5(5년균등철폐)
· 기준세율에 의거 매년 3%씩 관세인하, 이행 5년차 부터 무관세
· 이행 1년차: MFN세율(10%)<FTA세율(12%)→10-0.5=9.5% 특혜관세적용
· 이행 2년차: MFN세율(10%)>FTA세율(9%)→FTA관세 9% 적용

※ 대상품목: 자동차의 안전벨트(HS 8708.21-0000)-'c'

· 기준세율 15%(2010년)/MFN세율5%(2012)/양허유형5(5년균등철폐)
· 기준세율에 의거 매년 3%씩 관세인하, 이행 5년차부터 무관세
· 이행 1년차: MFN세율(5%)<FTA세율(12%)→5-0.5=4.5% 특혜관세적용
· 이행 2년차: MFN세율(5%)<FTA세율(9%)→5-0.5=4.5% 특혜관세적용
· 이행 3년차: MFN세율(5%)<FTA세율(6%)→5-0.5=4.5% 특혜관세적용
· 이행 4년차: MFN세율(5%)>FTA세율(3%)→FTA관세 3% 적용

자세한 내용은 중기이코노미(www.junggi.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키스갤러리 **이유미** 아트컨설턴트
kissgallery@naver.com

1 _____ 풍선, 31.8 x 40.9 cm 유화

카르페 디엠

기진호 작가

왜 풍선을 그리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럴 때마다 '카르페 디엠'(Carpe Diem)과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라는 용어를 들어 설명한다. 카르페 디엠, '지금을 즐겨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현재에 대한 집중은 죽음을 향해가는 인간이 벌이는 시간적 저항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축제로 향유하고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 다다름으로써 영원한 시간을 누리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 '죽음을 생각하라'는 메멘토 모리는 카르페 디엠의 덧없음을 상기시킨다.
'풍선'은 축제가 벌어지는 곳에서 흔히 사용되는 물건이다. 축제의 즐거움을 고조시키면서도 그 순간이 지나면 속절없이 스러지게 될 운명을 지닌 풍선은 카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 사이에서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는 인간의 삶을 은유한다. 적절히 부푼 풍선은 욕망 추구와 절제 사이의 균형감을 환기한다. 오색 풍선은 각양각색의 삶을, 그러면서도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는 풍선은 별다를 것 없는 인생을 표상한다. (작가노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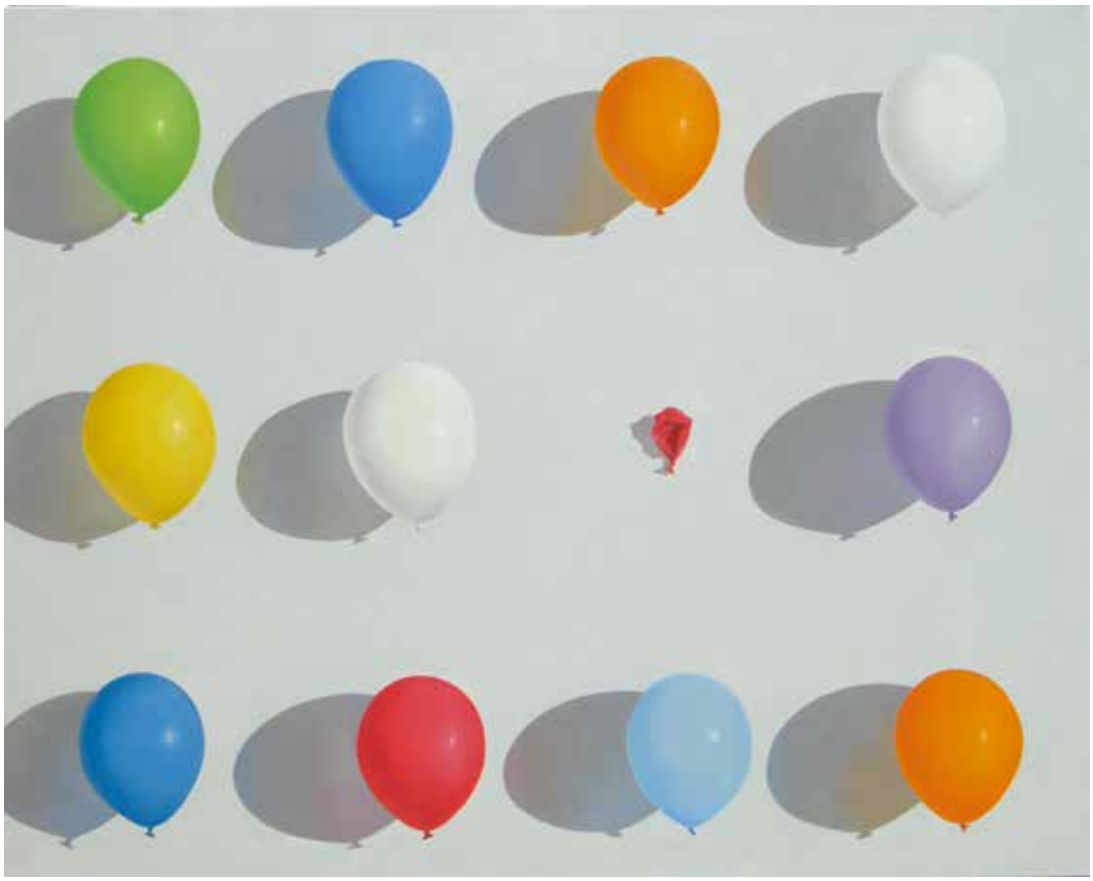

2 풍선-1, 162.2 x 130.3 cm, 유화, 2012

〈풍선-1,2,3〉은 풍선 연작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작가는 풍선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삶의 양태를 표현하고자 했다. 풍선은 과도하게 부풀면 터져버리고 덜 부풀면 볼품이 없게 되는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풍선은 욕망의 추구와 절제 사이의 긴장감을 환기하는 이중적 메타포를 지닌다. 가지각색의 풍선이 서로 다른 삶의 꿈과 희망을 표현한다면, 동일한 형태의 반복은 획일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은유한다.

〈풍선-1〉은 제13회 개인전의 대표작으로서 12개의 풍선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작품이다. 풍선들과 그것들이 만들고 있는 그림자의 반복은 엄격한 편안함을 느끼게 하며, 또한 유사성과 차이의 변주는 화면에 리듬감을 부여한다.
부푼 풍선 사이로 바람 빠진 풍선이 등장한다. 얼핏 쪼그라든 풍선은 관람자로 하여금 욕망한 후에 다다르게 되는 삶의 공허함을 불러일으키는 듯하지만, 바람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당당함을 드러내는 매개물이기도 하다. 기껏 바람 한 줌 빠졌을 뿐이다.

3 풍선-2, 60.6x72.7cm, 유화, 2013(좌)
4 풍선-3, 72.7x90.9cm, 유화, 2013(우)

형상은 언제나 같지만 매번 새로운 형상이다. 형상은 지루하지만 지루하지 않다. 같지만 새롭고 지루하지만 지루하지 않은 것, 그것이 형상이다.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가? 반복은 고유한 리듬을 낳는다. 그 리듬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반복과 차이 사이에 리듬이 있다.(중략) 차이로 인해 반복은 무한회귀한다. 반복은 되돌아오면서 미세한 차이를 낳고 다시 자기 난 자리로 돌아가며 반복운동을 한다.

(중략) 반복과 반복 사이, 미세한 차이는 각질을 부드럽게 하고 세계를 감싸안는다. 마찬가지로 차이와 차이 사이, 미세한 반복은 교조에의 추락을 막고 다시 세계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준다. 작가는 자신의 그림작업이 그 사이에 있다고 생각한다. 반복과 반복 사이, 미세한 차이는 유행의 강박을 견디게 할뿐더러 유행과 세계 사이에 가로놓인 심연을 사유하게 한다. 차이와 차이 사이, 미세한 반복은 파편으로 치닫는 세계의 심리적 방어선이기도 하다. (후략) 〈풍선 연작 평론: 이정현〉

〈풍선-3〉에서 오색 풍선들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이 두둥실 떠 있다. 제각기 다른 빛깔로 부푼 꿈들이 하늘거린다. 이 풍선들이 흩어져 언젠가는 바람이 빠져 결국 사라질 운명이라 한들 어떠랴. 서로 다른 채로 다 함께 공존하는 이 순간은 희망이다.

이 작품에서는 균일한 크기의 풍선들이 화사하고 산뜻한 색의 구성과 함께 극사실주의와 리얼리즘의 경계에서 반복적 리듬을 자아내며 밀도있는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노톤을 바탕으로 채도와 음영의 대비만으로 견고하면서도 차분한 색의 운율을 형성하고 미니멀리즘에서 볼 수 있을법한 건조하면서도 다소 절제된 조형에 대한 접근은 주관적 감성의 과잉을 경계하는 대신 은근하면서도 다소 우회적인 회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듯 보인다. '풍선'이란 오브제에 대한 남다른 사유와 이를 화면에 도입하여 일관되게 연작을 이어나간 점은 그가 '모티프'에서 고유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김정휘 평론)

5 분홍풍선 162.2x130.3cm, 유화, 2014

기진호는 〈풍선 연작〉과 더불어 〈마네킹 연작〉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생활 곳곳에 존재하는 마네킹은 실재의 대용물이면서 동시에 실재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 〈마네킹 연작〉에서 인공물은 자연물을 닮았고, 자연물은 인공물을 닮았다. 말하자면 화가의 화폭에서 마네킹은 실재와 허구, 자연물과 인공물의 경계를 교란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 현대적 공간에서 인공과 자연,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상황〉은 쇼윈도우에 있는 두 마네킹을 통해 소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앞쪽의 마네킹에는 입과 귀가 있으나 뒤에 있는 마네킹에는 없거나 불분명하다. 이는 소통에서의 비대칭성 혹은 소통 부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두 마네킹이 서로 깊이 연루되어 있어 음성언어의 한계를 초월한 깊은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BIZart

6 상황 53.0x65.1cm 유화 2013

7 두 사람, 100 x 80cm, 유화, 2015

8 풍선, 72.7 x 60.6cm, 유화, 2016

9 푸른 풍선, 80.3x65.1cm,유화, 2014

10 풍선, 72.7 x 60.6cm, 유화, 2017(위)

11 풍선, 72.7 x 60.6cm, 유화, 2016(아래)

기진호/KEE, JINHO

1968년 출생
서울교육대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졸업

개인전
16회 개최: 빛갤러리, 메이준갤러리, 예술의전당(서울), 탐갤러리 외.
서울, 1989~2012

주요 그룹전
아트제주16, 제주도, 2016
블랑블루 호텔 아트페어, 서울, 2014
코리언 모던 아트쇼, 홍콩, 2014
파운틴 아트페어, 뉴욕, 2014
싱가포르 아트페어, 싱가포르, 2014
2013~14 아시아 컨템포러리 아트쇼, 홍콩, 2013, 2014
대구아트페어, 대구, 2013
마이에미리버아트페어, 미국, 2013
한미수교 60주년 기념전(Passage of Korean Art), 워싱턴, 2013
서울오픈아트페어(SOAF), 서울, 2012
한중미술교류전, 북경, 2011
외 다수

현재: 한국미술협회, 민족미술인협회

글.
김현성 아트브런치 대표
artmanse21@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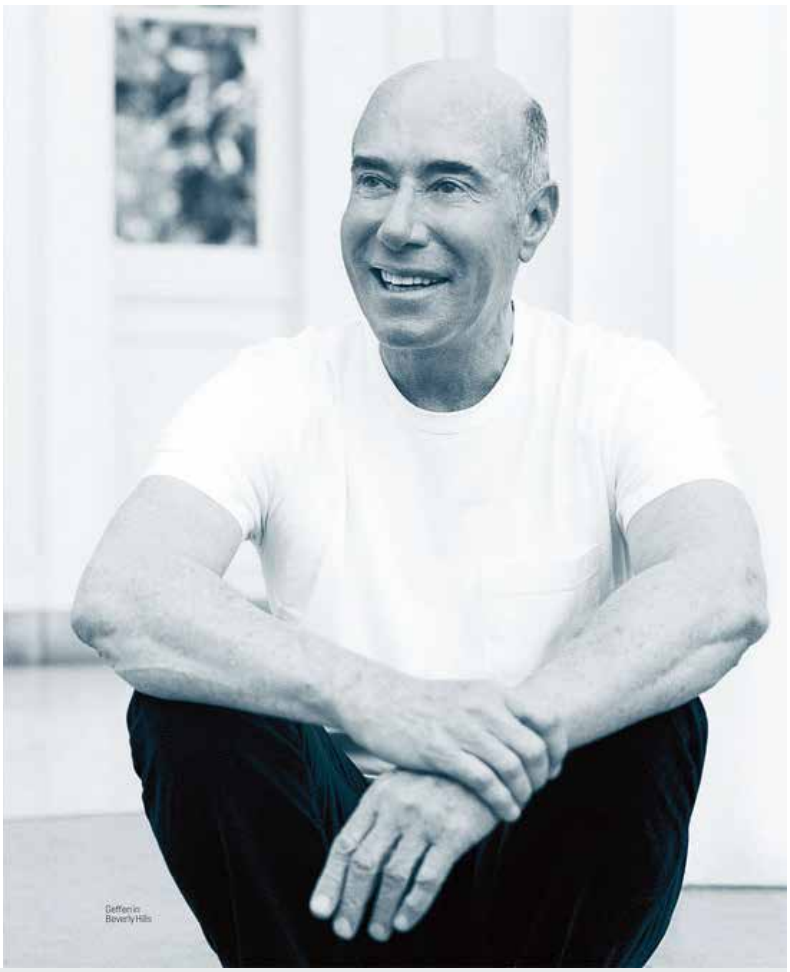

1

헐리우드 NO.1 아트 컬렉터

David Geffen
데이비드 게펜

1 데이비드 게펜(출처 www.flickr.com)
2 잭슨폴록, Number5,1948(출처 www.Jackson- Pollock.org)
3 윌렘 데 쿠닝, Woman III,1953(출처 www.willem-de-kooning.org)
4 재스퍼 존스 작품(출처 www.flickr.com)

"무질서가 아니라고, 젠장!"

미국 추상표현주의 화가 잭슨 폴록이 내뱉은 말이다. 미국에서 잭슨 폴록의 작품이나 드 쿠닝, 마크 로스코 같은 추상표현주의 대가들의 작품을 찾는다면 데이비드 게펜(David Geffen)의 수장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정답이다. LA현대미술관 폴 심멜 큐레이터는 "게펜보다 좋은 추상표현주의 컬렉션을 찾기 어렵다" 고 말한다.

2

브루클린 촌뜨기, 헐리우드의 거물이 되다

3

데이비드 게펜이 누구인가? 스티브 스필버그, 제프리 카젠버그와 드림웍스를 공동으로 설립했고,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음반 기획자이자 브로드웨이 뮤지컬 공연제작자로도 명성을 떨쳤으며 톰 크루즈를 영화배우로 데뷔시킨 사람이 바로 게펜이다. 이런 그를 미국에선 쇼 비즈니스의 마술사라고 부른다. 미국 경제전문지 Forbes에 의하면 이미 30대에 백만장자 대열에 합류한 그의 현재 재산은 74억 달러(약 8조원)라고 알려졌다. 주목할 점은 그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 절반 가량이 바로 미술품 컬렉션이라는 것. 대표작으로 마크 로스코와 잭슨 폴락, 드 쿠닝 같은 세계 톱클래스 작가들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트컬렉션 총액으로만 치면 세계1위다. 또 그는 자선사업가로도 유명하다. 2002년 5월에는 UCLA 의과대학원에 2억 달러를 기부했는데 이는 미국 의과 대학에서 가장 큰 단일 기부금이다. 학교 측은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름을 The David Geffen School of Medicine이라고 개명까지 했다.

데이비드 게펜은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다.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가게를 운영하던 어머니에게 비즈니스 기술을 배웠다고 한다. 16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다. 성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까지 겪으며 평탄치 않은 시절을 보낸 게펜은 난독증까지 심해 공부에 전념하지 못하고 결국 대학을 중퇴한다. 그의 첫 직장은 CBS의 우편실이었다. 일을 하다가 우연히 주디 갈란드 쇼(Judy Garland Show) 녹화모습을 보면서 완전 쇼 비즈니스에 빠지고 말았다고 밝혔다.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매니지먼트 사업에 눈 뜨면서부터다. 특히 음반사업에서 두각을 보였는데 Asylum Records와 Geffen Records를 설립해 존 레넌, 밥 딜런, 엘튼 존, 이글스 등과 같은 싱어송라이터들을 발굴하고 음반을 발매했다.

이 음반들은 그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줬고 1990년에는 레코드 회사를 MCA에 5억 5000만 달러에 팔아 억만장자의 대열에 올라섰다. 그리고 4년 후 스티븐 스필버그(Steven Spielberg), 제프리 카젠버그(Jeffrey Katzenberg)와 함께 영화 스튜디오 DreamWorks SKG를 설립해 2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잠재되어 있던 프로듀서로서의 능력을 개화시킨 것.

4

Hollywood's top 10 art collectors

자료: Wealth-X (all dollar amounts in U.S. millions)

Rank	Name	Estimated value of art collection	Estimated net worth
1	David Geffen	2,300	7,000
2	George Lucas	600	6,400
3	Arnon Milchan	600	5,000
4	Steven Spielberg	240	3,200
5	Jack Nicholson	100	400
6	Steve Tisch	50	700
7	Brad Pitt	25	400
8	Jacob Bloom	14	95
9	Michael Ovitz	12	380
10	Leonardo DiCaprio	10	260

그는 이후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재스퍼 존스(Jasper Johns), 윌리엄 드 쿠닝(Willem De Kooning) 및 잭슨 폴락(Jackson Pollock) 등의 작품을 포함한 현대 미술 컬렉션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현대미술작품들을 보면서 앞으로 내달리기만 했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평안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6년 4월에는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관 모마(Museum of Modern Art)에 1억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게펜의 현대미술 컬렉션에는 래리 가고시안이라는 세계 최고의 아트딜러의 도움이 있었다. 둘은 오래된 친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다. 그의 도움으로 게펜은 투자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매입할 수 있었고 막대한 거래차익도 얻을 수 있었다.

게펜은 수집에 능할 뿐 아니라 사들인 작품을 되파는데도 수완을 발휘했다. 어렵사리 확보한 드 쿠닝의 〈Woman III〉 작품은 헤지펀드 매니저인 스티브 코헨에게 1억 3750만 달러에 매각했고, 잭슨 폴락의 〈No.5〉도 1억 4000만 달러에 멕시코 금융재벌 데이비드 마르티네즈에게 넘겨 차익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헐리우드 아트컬렉터 Top 10 명단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 감독과 배우들이 많다. 단연 데이비드 게펜이 1위이고, 브래드 피트, 조지 루카스, 잭 니콜슨,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컬렉션을 시작하게 된 것 또한 게펜의 영향력이다.

지금은 은퇴한 게펜은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놀라운 여정'이라고 밝혔다. 사람들이 무엇에 열광하고 즐거워하는지를 직관적으로 단지 알아차렸을 뿐이라는 데이비드 게펜의 성공적인 삶의 한 축에는 미술작품 수집이 있었다. 그가 미술투자를 통해 막대한 부를 취한 것도 사실이고, 그가 어느 누구보다 미술작품을 사랑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BIZart

글.
안진국
미술평론가, 종합인문주의 정치비평지『말과활』편집위원
critic.levahn@gmail.com

광장에서 합창하는 봄을 위한 노래

2008년 "HOPE"라는 단어가 미국을 뒤흔들었다. 올해에는 "WE THE PEOPLE"이라는 문구가 미국을 뒤흔들고 있다. 2008년 오바마 시대를 눈앞에 두고 미국은 "희망"을 노래했지만, 트럼프 시대가 열린 2017년에는 "우리가 국민(We the People)"이라고 외치고 있다. 그 노래와 외침을 대변하는 자리에 그가 있다. 그는 거리에서 꿈을 키웠다. 거리는 그의 전시장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의 것이다. 광장은 그의 실험장이며, 그의 의지를 드러내는 공간이다.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은 그의 작품을 들고 자유를, 평등을, 권리를 부르짖고 있다. 벽의 낙서나 하찮은 포스터에 지나지 않았던 그의 작품은 광장의 정치 시대에 사람들의 손에 들려 그들의 목소리가 되고 있다. 그의 작품은 광장의 정치 시대에 새로운 예술적 외침이 되고 있다. 광장의 정치로 힘겹게 민주주의의 봄으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는 대안적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바로 미국의 길거리 예술가이자, 그래픽 디자이너이며, 활동가인 셰퍼드 페어리(Frank Shepard Fairey)이다.

1___ 셰퍼드 페어리 〈우리가 국민 (We the People)〉 2017 (출처:© Shepard Fairey/Amplifier Foundation)

2017년의 'WE THE PEOPLE'과 2008년의 'HOPE'

미국은 2008년 이후 가장 뜨거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올해가 2008년과 다른 점은, 2008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이 희망으로 차올랐다면,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가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불안감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점이다. 여러 매체에서 이제 '트럼포칼립스'(trumpocalypse; 트럼프와 종말을 뜻하는 apocalypse의 합성어) 시대가 열렸다고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오직 미국'을 외치며 반이민, 반세계화, 반워싱턴정치를 표방하며 등장한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이후 그가 표방했던 정치를 현실화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우선주의'와 '신(新)고립주의'를 꺼내들었고, 강경한 반이민 정책으로 백인 우월주의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정책은 세계인을 공분하게 했으며, 미국 국민을 광장에 불러내고 있다. 이 광장에서는 2008년 버락 오바마의 대선 포스터를 제작하여 당선에도 기여했던 셰퍼드 페어리의 새로운 포스터가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다. 바로 "WE THE PEOPLE"이란 문구가 적힌 연작 포스터이다. 이 포스터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여, 이민자(지역), 여성(성별), 흑인(인종)을 주체로 드러낸 작업이다. We the People이 "우리가 국민"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민지역,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이 국민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이는 트럼프의 정책이 국민을 '백인 남성'으로만 생각하는 것에 대한 항의이다. 이 포스터들은 광장 정치의 상징적 이미지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 포스터를 만든 셰퍼드 페어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2008년 당시 오바마 대선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일명 '희망' 포스터로 알려진 오바마 대선 포스터를 제작하면서부터이다. 이 포스터는 오바마의 얼굴을 붉은색과 푸른색의 강렬한 대비로 표현하고, 하단 부분에 'HOPE(희망)'이라는 글자를 넣어, 유권자들에게 오바마를 강렬한 이미지로 기억하게 하였다. 오바마의 당선에도 혁혁한 공헌을 했다. 시사주간 타임지는 2008년 '올해의 인물'로 오바마 당선자를 선정하면서 표지에 이 포스터를 사용하였고, 페어리는 이를 계기로 국제적인 예술가로 떠올랐다. 그 뿐만 아니라, 이 희망 포스터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의류와 각종 기념품으로 제작하여 페어리는 40만 달러 이상의 이익을 남겼다. 하지만 이 희망 포스터는 AP통신의 사진을 기초로 제작된 것으로, AP통신이 페어리에게 사진 무단 도용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AP통신과 포스터로 벌어들인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하는데 이르렀다.

2___ 셰퍼드 페어리의 〈우리가 국민〉 포스터가 붙어 있는 광경 (출처:Amplifier Foundation)

거리의 말썽꾼에서 광장의 활동가로

거리미술에 혁명을 일으켰다고 평가되는 셰퍼드 페어리도 오바마의 희망 포스터로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일반인에게 사실 거리의 말썽꾼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거리미술이 그렇듯 그도 거리 곳곳을 캔버스 삼아 불법적으로 작품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만든 절제된 표현의 일명 '오베이(OBEY)' 스티커와 거대한 포스터를 도시의 건물 곳곳에 덕지덕지 붙이며 언더그라운드 미술계에 혁명을 일으켰다.(물론 지금도 거리 곳곳에 스티커나 포스터를 붙이고 다닌다.) 그의 거리미술 작업은 1988년 그가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 학생 시절에 시작되었다. 그 당시 그는 프랑스의 전설적인 프로레슬러 '앙드레 더 자이언트(André the Giant)' 이미지와 "거인에겐 군중이 있다.(THE GIANT HAS A POSSE.)"라는 문구를 함께 넣은 초기 형태의 오베이 스티커를 로드아일랜드 주의 도시 곳곳에 붙이기 시작하였다. 페어리가 사용한 앙드레 더 자이언트는 덩치가 커지는 거인병을 앓았던 프로레슬러로 결국 거인병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인물이다. 페어리는 이후에 이 거인 레슬러의 이미지를 단순화하고, OBEY라는 단어를 함께 넣은 스티커를 만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이 스티커를 붙이며 돌아다녔다. 반복적으로 그 이미지를 도시 곳곳에 노출시킨 것이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파급력이 강해서 그가 하는 반복적 이미지 노출 방식을 따라하는 거리미술 작가가 많아졌고, 이제는 그의 '오베이' 작업이 거리미술의 아이콘 중 하나가 되었다. 페어리는 "복종하라(OBEY)"는 단어가 들어간 거인 레슬러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동시에 각자의 주변을 둘러싼 환경에서 개인이 무엇에 '복종하는지' 한번쯤 의문을 가져보길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거리에서 반복적으로 이미지를 노출 작업을 선보였던 페어리는 2008년 버락 오바마의 희망 포스터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작업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 중 가장 최근에 선보인 작업이 바로 '위 더 피플' 운동의 주최인 Amplifier Foundation(theamplifierfoundation.org)에서 선보인 〈우리가 국민 (WE THE PEOPLE)〉 연작이다. 그는 이 작품을 명확히 정치적 목적으로 제작되었고, 그렇게 사용되길 원했다. 누구든지 Amplifier Foundation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출력해 포스터나 피켓으로 만들어 시위에서 활용할 수 있게 했다.(이 홈페이지에는 셰퍼트 페어리 작품 외에도 다른 작가의 작품을 다운 받을 수 있다.) 이 페어리의 포스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2017년 1월 21일에 있었던 '여성 행진(Women's March)'에서 크게 활용되었다. 이날 있었던 여성 행진은 미국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었는데, 미국에서만 290만 명에서 42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였다. 이 행진에서는 여성 인권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 증진, 이민자 정책 개혁, 인종 차별·노동·환경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트럼프 정책을 규탄했던 이 행진에서 페어리의 〈우리가 국민〉 포스터는 곳곳에 등장하여 집회 참가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어떻게 보면, 페어리는 자신의 주요 작업인 오베이(obey)를 기반으로 작은 의류회사인 'OBEY' 브랜드를 운영하는 면모를 보이는 상업적인 작가이다. 또한 자신의 현장 활동을 상업적으로도 연결하는 능력이 탁월해 보인다. 오바마의 희망 포스터가 수익으로 환원되었던 값진 경험이 주요했던 것 같다. 현재도 그의 〈우리가 국민〉 포스터는 집회 현장 곳곳에서 등장한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엽서나 소품, 한정판 석판화 작품 등으로 또 다른 형태의 상업적인 작품으로 변환되어 판매되고 있다.(판매 수익이 집회의 운용자금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개인 수익이 되는지는 모르겠다.) 그렇다고 그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분명 그의 이미지는 미국인이 하고 싶은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고, 현실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작가도 생활인으로서 수익이 있어야 한다. 현실 참여적이면서도 수익형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의 활동은 어떤 측면에서 대안적 예술가의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BIZart

3 2017년 여성 행진(Women's March) 광경 (출처:www.northcountrypublicradio.org)

4 셰퍼드 페어리가 자신이 만든 오바마 희망 포스터 앞에서 포즈를 취한 모습 (출처:©Damian Dovarganes/AP통신)

5 오베이 포스터가 거리에 붙어 있는 장면.(출처:graffitiware.com)

글.
김정휘 미술평론가, 관념미학어워드 집행위원장
himanyoman@naver.com

관념미학 어워드 수상작

[관념미학 어워드 선정기준]

관념미는 작가의 관의 독창성의 수준이 높거나 상식으로부터 진일보할수록 발생하는 지적인 특성의 아름다움입니다. 관념미의 발현경로는 조형이론, 표현수단, 표현과정, 표현방식, 표현양식, 모티프로 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창적 조형이론이 존재하거나 관념의 미개척지를 개척하고 있는 경우(최상)
2. 표현수단, 표현과정, 표현방식, 표현양식, 모티프에서 뚜렷한 독창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상)
3. 타인의 양식에 기대어 있으나(특정인의 작품에 대한 연상작용이 강한 경우를 의미함) 2번에서 언급한 부문에서 독창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중)
4. 타인의 양식에 기대어 있으며 개성은 있으되 독창적 조형관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경우(하)

1

제41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 Urs fischer

스위스 출신, 뉴욕 거주

Urs fischer 작가는 갤러리의 평평한 바닥을 파내는 참신한 표현방식을 바탕으로 '상'에 해당하는 관념미를 드러내었기에 제41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로 선정되었다. 그동안 겔러리의 벽을 부수고 다양한 방식의 해체를 선보인 작가는 많았지만 건축을 위한 기초공사를 위한 것처럼 갤러리의 바닥 전체를 상당한 깊이로 파내어 황량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갤러리의 우아한 실내와 대비되게끔 시도한 것은 또 하나의 선구적 접근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1 Urs fischer 작품
2 Damian Ortega 작품
3 Leandro Erlich 작품
4 Baptiste Debombourg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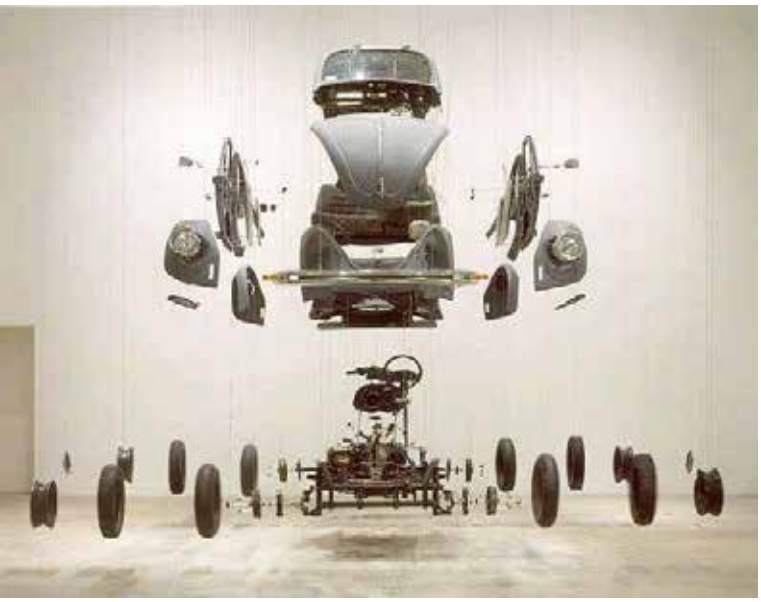

2

제42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 Damian Ortega

멕시코 출신

Damian Ortega 작가는 차량을 분해하여 그 부품들을 매달아 수평적으로 나열하는 참신한 표현방식을 바탕으로 '상'에 해당하는 관념미를 드러내었기에 제42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로 선정되었다. 작품의 구성을 보면 각 열의 매달린 부품들은 중앙으로 수렴되어 조립될 시에 그대로 완성된 차체를 기대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고 오브제를 매달고 있는 각각의 선들은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 작품은 감상자로 하여금 익숙한 사물의 원자화에서 비롯된 당혹스러움과 공허함을 느끼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으며 차량의 조립공정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뮬레이션과 매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듯 보인다.

제43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 Leandro Erlich

아르헨티나 출신

Leandro Erlich 작가는 건축의 일부를 고공에 설치하는 참신한 표현방식을 바탕으로 '상'에 해당하는 관념미를 드러내었기에 제43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로 선정되었다. 작품의 구성을 보면 길이가 긴 창문이 여러 개 달려있는 건물의 일부는 분리되어 어떠한 장식적 고려도 배제된 채로 불규칙한 단면을 노출하며 사다리형태의 지지대에 기대어 있다. 타인의 일상의 흔적을 연상케 할 수 있는 실내의 일부만을 포착하여 이를 갤러리 밖 허공에서 전시하여 보여주는 접근은 유니크한 조형관념을 드러내기 위한 또 하나의 과감한 시도라 볼 수 있을 것이다.

3

4

제44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 Baptiste Debombourg

마이애미 출신, 파리 거주

Baptiste Debombourg 작가는 자연현상에서 비롯된 불가항력적인 물리적 충돌을 보는 듯한 연출과 긴박한 긴장감을 실내에 조성하는 참신한 표현방식을 바탕으로 '상'에 해당하는 관념미를 드러내었기에 제44회 관념미학어워드 수상작가로 선정되었다. 작품의 구성을 보면 투명하면서도 날카로움을 지닌 유리의 물성을 바탕으로 바닷물이 실내에 밀려와 그대로 얼려진 듯 세부적으로는 비정형적인 우연성 위에 기대고 있지만 동시에 리얼리즘적 섬세한 재현을 보여주고 있다. 표면의 균열과 설치의 규모가 감탄과 경이로움을 유발하며 정적인 실내를 역동적으로 환기시키는 독특한 특성에서 Baptiste Debombourg 작가의 조형에 대한 남다른 사유와 관을 엿볼 수 있다. BIZart

글.
오민수 작가 홍익대학교 동양화 박사 수료
dat1127@naver.com

인생무상과 부귀영화를 소망하는 화훼화

달력에 숫자가 변해간다.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며, 계절의 변화가 다가온다. 현대인들은 삶속에서 얼마나 계절을 느끼며,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계절마다 즐길 거리가 많고 풍부한 삶을 누려왔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시작이란 단어와 새로움이 다가온다. 주변을 둘러보면 새싹이 돋아나고, 꽃을 피우며 삶에 대한 설레임이 생겨난다. 싱그러움과 봄을 즐길 수 있는 꽃그림(화훼화)은 흔히 관조의 대상이 되고 낮과 밤의 주기와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간의 표시자로 인간의 인식체계와 실질적인 관계를 맺는다. 꽃을 그린 그림은 서아시아를 기원으로 하여 중국에서는 남북조시대에서 당에 걸쳐 널리 전파되었으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화폭 속에 꾸준히 그 시대에 맞게 선택되어져왔다.

특히 회화에 있어서 꽃은 화려한 채색이나 수려한 형태를 가지며, 연꽃, 모란, 부용 등의 꽃과 각종 덩굴과 풀 문양이 장식적인 모티브로 크게 발전하였다. 이처럼 꽃을 그린 그림은 꽃의 아름다움을 재현하는 표현을 중심으로 발전하다가 점차적으로 특징적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물로 그 표현 방법이 변화하며, 가장 친숙한 자연의 표현으로 인류의 오랜 역사와 더불어 꾸준히 그려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화훼화에 있어서의 꽃의 상징적 의미, 영역, 이미지 표현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사임당, 초충도8폭, 지본채색, 34x28.3cm, 국립중앙박물관, 조선16세기

첫 번째로 조선시대 대표적 여류 화가인 신사임당(1504-1551)의 꽃그림들은 한국적인 소재, 구도, 색채, 주제 등의 표현 방법이 조선조의 전통적인 특성에서 볼 수 있는 형과 색의 통일적 구성에다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잡혀있고, 사물을 접함에 있어 철저한 의도보다 생동감있는 표현을 시도하여 소박하면서도 섬세한 특색을 보이고 있다.

2 심사정, 딱따구리. 견본담채, 25x18cm, 개인 소장(1747)

신사임당의 대표작인 '초충도8폭(草蟲圖8폭)'을 보면 나비·벌·매미·방아깨비·메뚜기·잠자리·하늘소 등과 같은 곤충이 패랭이꽃·맨드라미·나팔꽃 등의 식물과 단순한 구도를 이루며 어우러진 것으로 선묘는 잔잔하고 조용한 정지감을 맛보게 해주는 여성스러운 필치이다. 전체적으로 보여 지는 필선들은 리듬감과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꽃의 색들은 부드러운 중간색으로 통일되어 있어 깊이감을 더해간다.
꽃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주소재와 부소재를 적절히 대비하여 균제적인 특성을 잘 살리고 있고, 구도에 있어서 중앙구도와 사선구도로 안정감과 생동감을 주어 서정적인 분위기를 창조하고 있다. 신사임당은 자연 속에서 그들 스스로 서로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정격을 그리고자 한 것이다. 온갖 화훼들과 초충들의 모습을 친근함이 있는 진실된 시각을 통하여 표현하려 했던 것이라고 보인다. 즉, 외로움과 쓸쓸함, 고독감 그리고 자신의 병약한 처지에 비추어 이웃이나 인척간의 정을 그리워하며 재미있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초충을 빌어 화폭에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18세기의 대표적인 문인화가인 현재(玄齋) 심사정(1707-1769)으로 당대의 화가 강세황(1713-1791)은 "현재는 못 그리는 그림이 없지만, 화훼와 초충을 가장 잘했고, 그 다음이 영모, 그 다음이 산수이다"라고 평할 정도로 화훼화에 일가견이 있는 화가이다. 현재는 다른 장르의 그림보다 소재나 표현방식에 구애받지 않는 화조화를 즐겼으며, 꽃과 새가 간직한 계절성과 장식성을 시각화하기 위해 독창적 화법을 터득하고자 노력했다. 현재가 그린 무수한 꽃 그림에는 다양한 곤충들이 등장한다. 특히 그는 꽃과 함께 아름다운 나비를 많이 그려 화면의 조화를 추구했다. 심사정의 화조화 중 대표작 〈딱따구리〉는 대담한 구성으로 큰 그림에서 느낄 수 있는 격을 갖춘 훌륭한 작품이다.
홍매화가 비스듬히 서 있는 가운데 머리와 배가 선홍색인 딱따구리가 이 매화 등걸에 달라붙어 쪼고 있다. 고목이 된 매화나무의 의연한 모습과 주저함 없이 자신 있게 쓴 필법, 그리고 활짝 핀 매화에 쓰인 여유 있는 붓질이 매화의 화사함과 더불어 능숙한 솜씨를 보인다. 더구나 수묵을 위주로 하면서도 먹과 어울린 선명한 색채가 눈길을 끈다. 그는 풍경화뿐만 아니라 작은 동물이나 곤충의 그림도 많이 그렸는데. 이 그림도 높이가 30센티미터를 넘지 않는 작은 그림이지만 먹의 농담과 색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큰 그림에서 느낄 수 있는 격조가 느껴지고 있다. 거침없이 힘있게 펼쳐지는 붓의 필치와 딱따구리의 붉은 깃털과 매화의 색감이 화면 속에 작가의 충분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화훼화는 자연을 사랑하고 그림으로 집안을 장식하기를 좋아했던 소박한 우리의 민족성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친밀감으로 민화 중에서도 가장 많이 그려진 그림이다. 화려한 꽃의 아름다움이 주는 장식적인 면 외에도 자연 안에서 피고 지는 꽃, 자연과 함께 어울려 있는 동물들에 대한 우리 민족의 애정을 그림 속에 담았다. 집안이 번성하고 장수하며 재물과 사회적 출세를 바라는 현세적 소망과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화훼 그림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시공을 넘어 인간이면 누구나 소망하는 것이었다. 이런 소망을 담은 화훼화를 우리 일상에서 자주 접하고 그에 따른 소망과 심리적 안정감을 찾았던 것이다. BIZart

글.
아트편집팀
artbrunch@naver.com

Marcel Duchamp

마르셀 뒤샹

1 뒤샹과 그의 부인 알렉시나 세틀러(출처 www.writeopinions.com)(좌)
2 L.H.O.O.Q(출처 www.wordpress.com)(우)

다다이즘, 샘, 변기, 자전거, 모나리자, L.H.O.O.Q, 체스, 피론,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 개념미술 등등 '마르셀 뒤샹'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다.

뒤샹은 1887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다. 독신을 추구했으며, 체스 두기를 인생의 낙으로 여긴 낙관주의자였다. 한 번은 인쇄된 모나리자 그림엽서를 사서 얼굴에 콧수염을 그려넣고 그것만으로는 성에 안 찼는지 그림 밑에 대문자로 'L.H.O.O.Q'(프랑스 말로 발음하면 '그녀는 뜨거운 엉덩이를 가졌다'는 뜻) 라고 적어 넣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400주년을 기념하던 프랑스 미술계를 발칵 뒤집어놓기도 했다.

사실 뉴욕 다다이즘을 이끌던 뒤샹은 'L.H.O.O.Q'를 발표하기 3년 전인 1916년 뉴욕의 '앙데팡당'전에서 남자 소변기에 제작자 이름인 'R.Mutt'를 서명하고 〈FOUNTAIN, 샘〉이라는 작품을 출품해 뉴욕 미술계를 경악케 한 경력이 있었다.

개념미술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뒤샹이 기존 권위를 조롱하며 도전장을 던진 걸까? 오히려 그는 "삶은 그것을 즐겁게 누릴 때 달콤한 것이 된다. 나의 유머란 그것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규범적으로 인식된 장르적 구분에 속하지 않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사유와 유머를 잃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차라리 미술사를 바꾼 뒤샹의 일련의 작품 제작 동기를 그의 불순한 의도에서라기보다는 세계관 쪽에서 찾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철학자 피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진 그는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깊이 관여하지 않으려 했으며 어떠한 삶의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싶어했다. 작품 또한 자신을 강제적으로 몰아붙일만큼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작품 이전에 삶을 관조하고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신비주의자에 가깝다. 실제로 그는 1966년 장 앙트완느와의 대담에서 "궁극적으로 나의 삶을 예술작품으로 고려하고자 했다"라고 고백하기도 한다.

그런 뒤샹에게는 몇 명의 연인이 있었다. 첫 번째 연인은 그의 모델이 되어 주었던 장느 세레라.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사랑을 나눴지만 둘 사이에는 훗날 화가로 성장한 딸이 하나 있었다. 뒤샹은 딸을 위해 후원자를 소개하기도 하고 전시회를 열어주기도 했다.

두 번째 연인은 오랜 방랑생활에 지친 뒤샹이 무너지듯 선택한 사라쟁 르바소다. 그녀는 프랑스 자동차 기업 회장의 딸로 많은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뒤샹의 첫 번째 결혼 상대였던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세계에만 집착하고 체스만 두는 뒤샹을 견디지 못하고 6개월 만에 이혼을 한다. 이후 오랜 기간 독신생활을 하던 뒤샹은 1954년 67세 되던 해 알렉시나 세틀러를 소개로 만나 결혼한다. 당시 45세였던 알렉시나(Alexina Sattler MatisseDuchamp)는 화가 앙리 마티스의 며느리였다. 즉 그의 둘째 아들인 피에르 마티스의 부인이었다가 뒤샹의 두 번째 부인이 된 것이다. 그녀는 '티니(Teeny)'라는 애칭으로 불렸는데 당시 세 자녀의 어머니였다. 조각을 전공한 그녀는 뒤샹과 함께 체스 두기를 즐겼으며 줄곧 여행을 다녔다. 뒤샹은 자신의 삶과 작품세계를 깊이 이해한 알렉시나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1967년 〈백색상자〉라는 노트 모음집을 작품으로 남긴 채 1968년 10월 생을 마감했다. BIZart